

## 5. 학생간행물발간에 관한 시행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본교의 학생단체나 학생이 정기, 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간행물의 분류) 간행물을 발간하는 주체의 종류에 따라 학생간행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. 전교단위의 학생간행물
2. 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(2020.4.21. 개정)
3. <삭제>(2020.4.21. 삭제)
4. 동아리단위의 학생간행물
5. 개인단위의 학생간행물

제3조(전교단위의 학생간행물) ① 전교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발간추천원(학생지원처 소정양식)에 인쇄내역서, 편집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학생지원처에게 제출한다. (2019.2.8.개정)

② 모든 원고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사전지도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③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학생지원처장의 결재로 집행된다. (2019.2.8.개정)

제4조(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) ① 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(학생지원처 소정양식)에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, 예산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. (2019.2.8.개정)(2020.4.21. 개정)

② 소속 학과 학생지도 담당교수를 그 지도교수로 한다. (2020.4.21. 개정)

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사전지도를 거쳐서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(2020.4.21. 개정)

④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소속 학과장의 승인과 학생지원처장의 결재로 집행된다. (2019.2.8.개정)(2020.4.21. 개정)

제5조<삭제>(2020.4.21. 개정)

제6조(동아리단위의 학생간행물) ① 동아리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(학생지원처 소정양식)에 인쇄내역서, 편집계획서, 예산서 및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한다. (2019.2.8.개정)

② 당해 동아리 지도교수를 그 지도교수로 한다.

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거쳐서 학생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④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지도교수의 허가와 감독하에 집행된다.

제7조(개인단위의 학생간행물) 본교 재학생에게 배포할 것을 목적으로 학생이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20.4.21. 개정)

제8조(발간허가) 학생단체의 간행물발간추천원은 학생지도위원회 출판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.

제9조(인쇄소의 지정) 학생간행물의 발간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지원처장은 인쇄소를 지정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10조(편집, 인쇄의 지도) ① 간행물의 편집과 인쇄과정은 간행물별 지도교수가 각각 책임

지고 지도한다.

② 인쇄부수는 소속 학생수를 참작하여 지도교수가 적절히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배포) 모든 학생간행물은 배포 전에 지도교수와 학생지원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2019.2.8.개정)

제12조(유보)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 출판분과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개정)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출판분과위원회의 결의(재적위원 과반수찬성)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